

## 2.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법률 제5,584호 1998. 12. 28

### 개 정 이 유

5년단위의 한시법으로 운용되어 온 조세감면규제법의 적용시한이 1998년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동법의 내용을 포함하여 모든 조세특례규정을 포괄하는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환함과 아울러, 각 특례의 적용시한을 해당 조문에 설정하여 조세감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우리 경제의 현안과제인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고 성장잠재력을 배양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하며, 성실한 납세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 요 골 자

- 가. 일반 법률에 의한 조세감면사항과 개별 세법에 의한 조세특례사항을 이 법에서 포괄하여 규정하고, 감면조문별로 그 적용시한을 설정하여 성과분석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향후 조세지출예산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함.
- 나.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개인이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20퍼센트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벤처기업의 주식을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함(법 제14조 및 제16조).
- 다. 1998년 8월 25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 중고설비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금액의 5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하도록 함(법 제27조).

- 라. 기업구조조정협약에 의한 기업개선작업에 따라 채권금융기관이 법인의 채무를 감면하는 경우 채무를 감면받은 법인은 채무면제익을 3년거치후 3년에 걸쳐 분할하여 익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채권금융기관은 감면한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도록 함(법 제45조).
- 마. 2개이상의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의 주식을 교환하여 기업을 양도·양수하는 경우 법인주주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과세이연하도록 하고, 개인주주의 주식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50퍼센트를 감면하도록 함(법 제46조).
- 바.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구조조정기업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과 구조조정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하도록 함(법 제55조).
- 사. 연간 공급가액이 1억5천만원미만인 개인사업자가 1999년분 매출액을 성실신고하는 경우에는 성실신고한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3년에 걸쳐 경감하도록 하고, 성실신고한 과세기간 및 그 이전 과세기간에 대해서는 개정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영세사업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함(법 제123조 및 제125조).
- 아.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경영정상화가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차입금 과다법인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제도를 4년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법 제139조).